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운영요령

2025. 1.



한국물기술인증원

목 차

제1장 총 칙	1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정의	
제3조 업무범위	
제2장 최초성능검사	2
제4조 성능검사 평가기준	
제5조 실증화시설 입주	
제6조 성능검사 신청	
제7조 성능검사 준비사항 안내	
제8조 시료채취 신청서 제출	
제9조 사전 현장점검 등	
제10조 현장검사	
제11조 검사중단 등	
제12조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제13조 검사성적서 발급 등	
제3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7
제14조 심의위원회	
제15조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제16조 위원의 해촉	
제17조 제척·회피	
제4장 서면성능검사 등	9
제18조 서면성능검사 신청 등	
제19조 서면성능검사 검토·판정	
제20조 검사결과 처리	
제5장 보 칙	11
제21조 문서의 보존	
제22조 사후 원인규명	
제23조 수수료	

부 칙	12
[별표 1] 최초성능검사 업무처리절차	13
[별표 2] 서면성능검사 업무처리절차	14
[별표 3] 최초성능검사 신청서류 검토기준	15
[별표 4] 사전 현장점검 현장확인, 현장검사 점검사항 및 안내사항	17
[별표 5] 시료채취 기준 및 유의사항	19
[별표 6] 서면성능검사 검토·판정기준	20
[별지 제1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21
[별지 제2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 신청서	22
[별지 제3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기록표	23
[별지 제4호 서식] 검사신청시설 사전 점검표	24
[별지 제5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사진 참고자료	25
[별지 제6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확인표(1~5차)	26
[별지 제7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확인표(6~8차)	27
[별지 제8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성적서	28
[별지 제9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 입회 대리인계	29
[별지 제10호 서식] 설계도면	30
[별지 제11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품 정보공개 동의서 ...	31
[별지 제12호 서식] 위임장	32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결서	33
[별지 제14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품 판매·설치실적 제출 동의서 ...	34
[별지 제15호 서식]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부정행위 적발시 검사신청 금지 동의서..	35
[별지 제16호 서식] 입주기업 선정 평가서 및 항목별 평가점수표	36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운영요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요령은 「하수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2조, 「하수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제2항 및 「하수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한국물기술인증원(이하 “인증원”이라 한다)이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정의) 이 요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물·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침전·분해 등의 방법으로 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은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라 [별표 12]에서 정하고 있는 오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이하 “제조제품”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실증화시설”은 수요자설계구역과 야외실험구역으로 구분되며 소규모 장치·공정을 설치하여 기술 개발 및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국가물산업 클러스터 내 실규모 실증시험 구역을 말한다.
4. “최초성능검사”는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 또는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가 제조·판매하려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에 대하여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적합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검사를 말한다.
5. “서면성능검사”는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에 합격한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 서면으로 성능검사 적합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검사대상시설”은 신청자가 최초성능검사 또는 서면성능검사를 신청하여 성능검사 적합여부 판정의 대상이 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7.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운영요령에서 말하는 소요일수는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업무범위) 이 요령에서 정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행령 제32조,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설계도서 및 관련 자료 검토
2. 최초성능검사 신청시설의 유입수와 처리수의 시료채취 및 분석을 통한 제품평가
3. 최초성능검사에 합격한 시설의 규격 변경을 위한 서면성능검사
4. 최종 성능검사 적·부 판정결과를 신청자와 등록관청에 통지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성능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장 최초성능검사

제4조(성능검사 평가기준) 성능검사의 평가기준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에 관한 기준이며, 시행규칙 제55조 [별표 12]에 따른다.

제5조(실증화시설 입주) ① 인증원장은 실증화시설에 최초성능검사가 가능한 공실이 발생할 경우 신청기업 모집안내문을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신청기업 모집안내문은 공실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 ③ 인증원장은 입주기업 선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하여야 한다.
- ④ 신청기업의 수가 발생한 공실의 수를 초과하는 경우 심의위원회에서 우선순위를 부여하여 입주기업을 선정할 수 있다.

제6조(성능검사 신청) ① 신청자는 최초성능검사 신청 전에 동절기(12월부터 3월까지)내 의무 성능검사 기간(50일)의 검사 수행가능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설용량의 합계는 20m³/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② 최초성능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성능검사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첨부서류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제57조제1항에 따른 서류
2.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른 재질검사 성적서(단, 서류심사가 완료된 시설에 한하여 제출)
3. 시행규칙 제53조제4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발행한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등록증(단,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자에 한하여 제출)
4. 설계도면 및 부대시설 사양서(규격, 재질 및 용량 등)
5.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적합제품 정보 공개 동의서
6.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적합제품 판매·설치실적 제출 동의서
7.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부정행위 적발시 검사신청 금지 동의서
8. 사업자등록증 및 기타 검사에 필요한 서류

③ 인증원장은 신청자가 제출한 성능검사 신청 관련 서류를 [별표 3] 최초 성능검사 검토기준에 따라 검토하여야 한다.

④ 인증원장은 제3항에 따라 검토한 내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1. 검사진행을 위해 필요한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신청서에 기재된 설계수질(유입수 및 처리수), 처리공법, 처리효율 및 처리용량 등이 첨부서류와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 ⑤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1. 신청한 시설이 시행령 제32조제2항 [별표 6]에 따른 재질 및 성능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2. 제5항에 따른 보완 요청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3. 제7항의 검사 수수료 납부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4. 그 밖에 인증원장이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⑦ 인증원장은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에 신청자에게 검사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인증원장이 통보한 기한 내에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성능검사 준비사항 안내) ① 인증원장은 검사 수수료 납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최초성능검사 시행과 관련된 안내사항을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과 관련하여 신청자에게 안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료채취(유입수, 처리수)가 검사기간 중 불시에 실시될 수 있는 사항
 2.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신청자는 모든 현장방문에 대하여 방문일지에 점검일시·점검자·점검사유 등을 기록해야 함에 관한 사항
 3. 시료채취 신청서 제출 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이 설치된 건물의 오수발생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건축물 대장 등)의 제출 관련 사항 (단,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오수발생량 증빙자료 제출 생략 가능)

4. 검사대상시설과 도면의 일치여부, 유량계의 적정 설치여부 확인 및 봉인, 시료채취 지점선정과 시설 내부 청소실시 등 사전 현장점검 내용 및 준비 사항
5. 시료채취 시 신청자 입회가 불가능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른 채수 입회 대리인 선정 및 대리인계 제출 관련 사항

제8조(시료채취 신청서 제출) ① 신청자는 검사대상시설의 제작완료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작완료 공문을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청자는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제작완료 공문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시료채취 신청서를 인증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시료채취 신청서 접수 시 신청자와 시료채취 일정을 협의하여야 한다.

제9조(사전 현장점검 등) ① 인증원장은 제8조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제작완료 공문을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사전 점검표를 작성하여 신청자가 검사대상시설을 검사장소에 설치하기 전에 현장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증원장은 검사대상시설에 대하여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현장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현장검사) ① 인증원장은 현장검사 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오수 처리시설 성능검사 기록표와 [별지 제6호 서식]의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확인표(1~5차) 및 [별지 제7호 서식]의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확인표(6~8차)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현장검사에 대한 점검사항은 [별표 4]에 따른다.

제11조(검사중단 등) ① 인증원장은 사전 현장점검 및 현장검사 시 검사대상 시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검사를 중단할 수 있다.

1. 시료채취 결과 BOD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 미만일 경우
2. 검사대상시설 제작완료 공문을 제출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가 시료채취 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기계장치를 포함한 검사대상시설을 교체·수리하는 경우
4. 그 밖에 인증원장이 검사중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② 인증원장은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인해 제12조에 따른 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중 문제가 발생하여 신청자가 이를 문서로 통지하는 경우 검사중단의 예외사항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③ 인증원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중단 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사유를 기재하여 신청자에게 검사중단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시료채취 및 시험분석) ① 최초성능검사기간은 6개월이며, 검사 시작일은 유량계 봉인 시점으로 하고, 시료의 채취 및 분석은 월 1회 실시하되, 마지막 달에는 시료를 3회(아침·점심·저녁) 채취 및 분석하여 검사기간 동안 총 8회 실시한다.

② 1차 시료채취는 시료채취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채취 신청서 접수 이후 인증원장은 신청자와 일정을 협의하여 유량계 봉인을 실시한다. 단,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입수는 유량계 봉인 시점부터 채취하여 측정된 BOD 유입수질을 다음 검사의 BOD 유입부하량 산정에 적용한다.

③ 2~5차 시료 채취는 이전 시료채취 시점으로부터 15일 경과 후 실시하여야 하며, 6~8차 시료채취는 성능검사 만료일 전 30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단, 채취일정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④ 인증원장은 검사일 당일에 신청자에게 검사대상시설의 검사실시를 통지하며, [별표 5]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야 한다. 단,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8조제3항에 의해 시료채취 신청서 접수시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시료채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13조(검사성적서 발급 등)** ① 인증원장은 채취한 시료의 수질분석 결과가 모두 검사신청서상의 처리수 수질기준 이내인 경우에 적합판정을 하고, 그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판정을 하여야 한다.
- ② 인증원장은 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검사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결과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성적서 및 설계사양서([별지 제10호 서식]의 설계도면 포함)를 신청자와 등록관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장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등

- 제14조(심의위원회)** ① 인증원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를 원활히 운영하기 위하여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심의위원회를 둔다.
- ②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시행규칙 제58조제1항에 따라 수행된 성능검사의 결과 등과 관련하여 심의·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2. 제5조제3호·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실증화시설 입주기업 선정평가와 관련된 사항

- 제15조(심의위원회 구성·운영)** ① 인증원장은 처리방법의 적정성 검토 및 제도운영에 대한 심의를 위해 개인하수처리시설 관련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자(이하 “관련 전문가”)로 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 ② 인증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을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을 갖춘 관련 전문가 중에서 위촉한다.

1. 대학의 조교수 이상으로 환경, 토목, 기계, 재료 및 산업공학 계통의 연구 또는 강의 경력을 가진 자
 2.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국·공립 연구기관의 관련 분야 책임 연구원 이상에 상당하는 자
 3. 상하수도 전문기관의 관련 분야에 10년 이상 근무한 자
 4. 제1호·제2호 및 제3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증원장이 인정한 자
-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 ④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7인 내외의 관련 전문가를 위원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단, 공석이 생겨 보궐로 위촉할 경우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⑤ 심의위원회는 재적위원의 과반수가 출석한 경우 성원된 것으로 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안건을 의결한다.
- ⑥ 제5항에 따른 심의위원회 성원 및 안건 의결 정족수 산정과 관련하여 위원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심의위원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 위원회 개최 전까지 [별지 제12호 서식]의 위임장 또는 [별지 제13호 서식]의 서면의결서를 제출할 경우 출석한 것으로 간주하며, 위원장이 불가피한 사유로 참석을 못 한 경우 참석한 위원 중에서 위원장을 호선한다.
- ⑦ 심의위원회는 간사를 두며 간사는 인증원 담당직원이 맡고, 간사는 회의 개최계획의 수립, 회의소집,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위원회 업무에 관한 사무 처리를 한다.
- ⑧ 인증원장은 심의위원회 개최 7일 이전에 제6조제2항에 따른 최초성능 검사 신청서류, 실증화시설 입주 신청서류 등 심의자료를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배포하여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 ⑨ 인증원장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업무와 관련하여 시행규칙 제57조 제1항에 대한 적정성 여부 및 공법에 대한 기술검토를 위하여 제2항의 심의위원회의 위원 및 관련 전문가에 기술자문을 구할 수 있다.

- ⑩ 인증원장은 심의위원회 위원 및 제9항의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의 해촉) 인증원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7조제2항에 따른 회피 의무를 위반한 경우

제17조(제척·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②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4장 서면성능검사

제18조(서면성능검사 신청 등) ① 법 제52조제4항에 따라 성능검사에 합격한 오수처리시설이 [별표 6]의 서면성능검사 검토·판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인증원장은 서면성능검사를 통해 규격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신청자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업합병 또는 검사대상시설이 양도·양수된 경우 이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신청자는 검사대상시설의 제조방법을 변경하고자하는 경우에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류 제출 시 변경 전 시설의 재질검사 성적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 ④ 인증원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를 검토한 내용이 제6조제4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⑤ 인증원장은 제4항에 따라 신청자에게 신청서류의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보완사유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신청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인증원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1. 신청한 시설이 제1항에 따른 서면성능검사 대상이 아닌 경우
 - 2. 제4항에 따른 보완 요청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3. 제7항의 검사 수수료 납부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한 경우
 - 4. 그 밖에 인증원장이 반려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⑦ 인증원장은 서류심사가 완료된 경우에 신청자에게 검사 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며, 신청자는 인증원장이 통보한 기한 내에 검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9조(서면성능검사 검토·판정) 인증원장은 검사대상시설과 처리공법·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같은 시설에 대한 최초성능검사 결과, 구조도 및 처리효율 산출자료 등을 [별표 6]의 서면성능검사 검토·판정기준에 따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

- 제20조(검사결과 처리)** ① 인증원장은 서면성능검사가 완료된 경우 검사 성적서 발급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결과와 [별지 제8호 서식]의 오수 처리시설 성능검사 성적서 및 설계사양서([별지 제10호 서식]의 설계도면 포함)를 신청자와 등록관청에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성적서에 최초성능검사 및 서면성능검사 전체에 대한 성적서 번호를 명기하여야 한다.

제5장 보 칙

- 제21조(문서의 보존)** ①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신청 등 관련 서류는 신청시설별로 기록·작성하여 관리한다.
- ② 성적서 사본은 검사 관련 서류와 함께 보관한다.
- ③ 검사대상시설별로 신청서류(설계도서 포함) 검토내용, 현장점검 항목의 확인내용 및 현장검사 업무수행 일지 등을 보관한다.

- 제22조(사후 원인규명)** 시료 분석결과가 일반적인 오수발생 성상 및 유사 시설에 비해 현격한 차이가 있는 시설은 원인규명을 위한 조사를 할 수 있다.

- 제23조(수수료)** ① 인증원장은 수수료를 환경부고시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재질검사기관 및 성능·재질검사의 수수료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청구한다. 단,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장비를 청구하지 아니한다.
- ② 검사대상시설 미설치, 시설의 정상운영 불가, 검사 결과 부적합 등으로 성능검사 수행이 곤란하거나 검사가 중단된 경우 인증원장은 해당 단계 까지 소요된 검사 수수료를 공제 후 반환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반환금액은 최초 납부금액에서 그간 소요된 비용(시험분석 비용, 직접인건비, 출장비 및 제경비)을 모두 공제하여 산정한다.

- ④ 수수료의 합계는 검사대상시설 1개당 금액을 말하며, 2건 이상의 성능검사를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는 경우 출장비를 중복산정하지 아니한다.

부 칙 <2019.12.9>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19년 12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7.20>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1년 7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4>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9.2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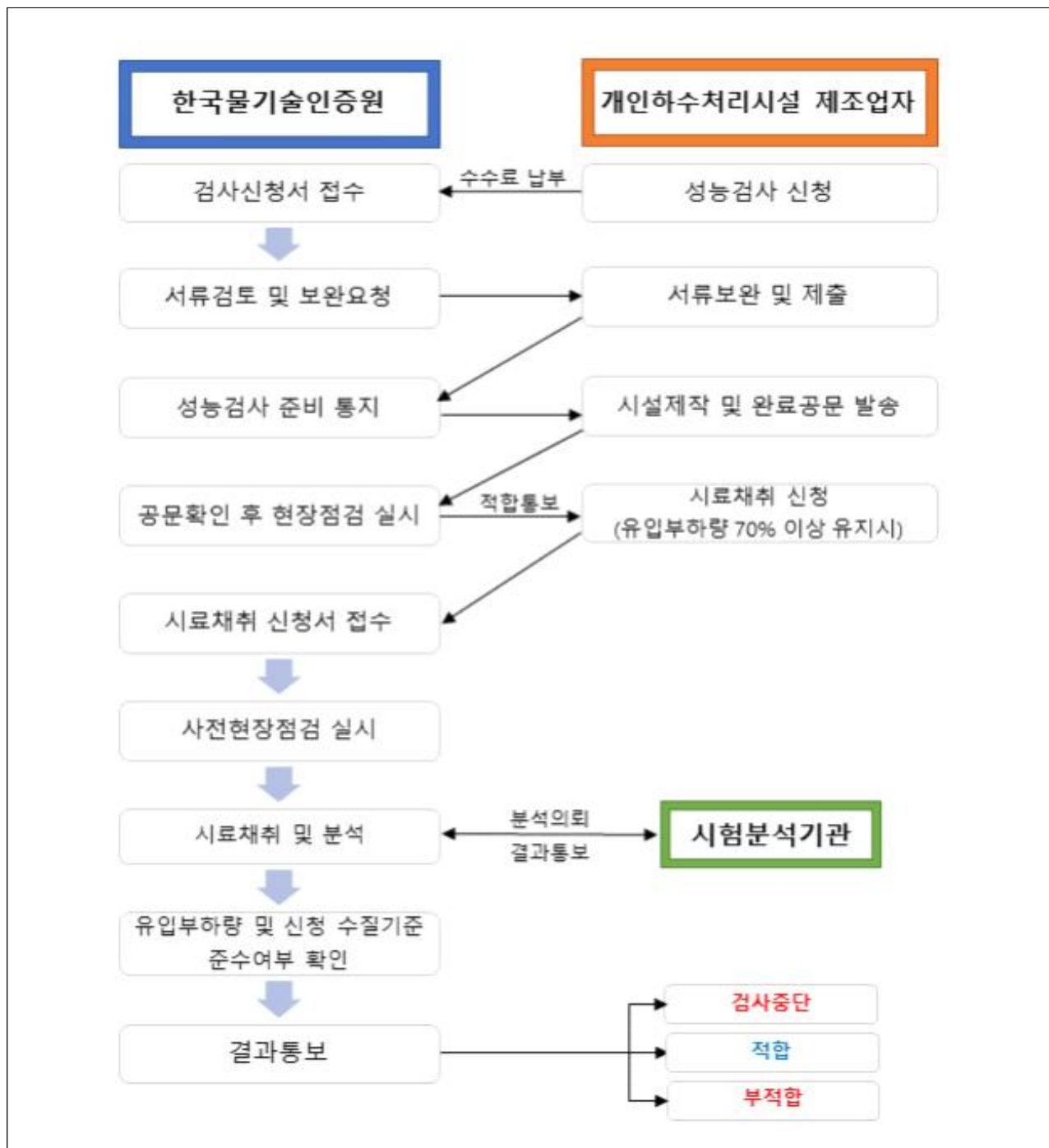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2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1.6>

제1조(시행일) 이 요령은 2025년 1월 6일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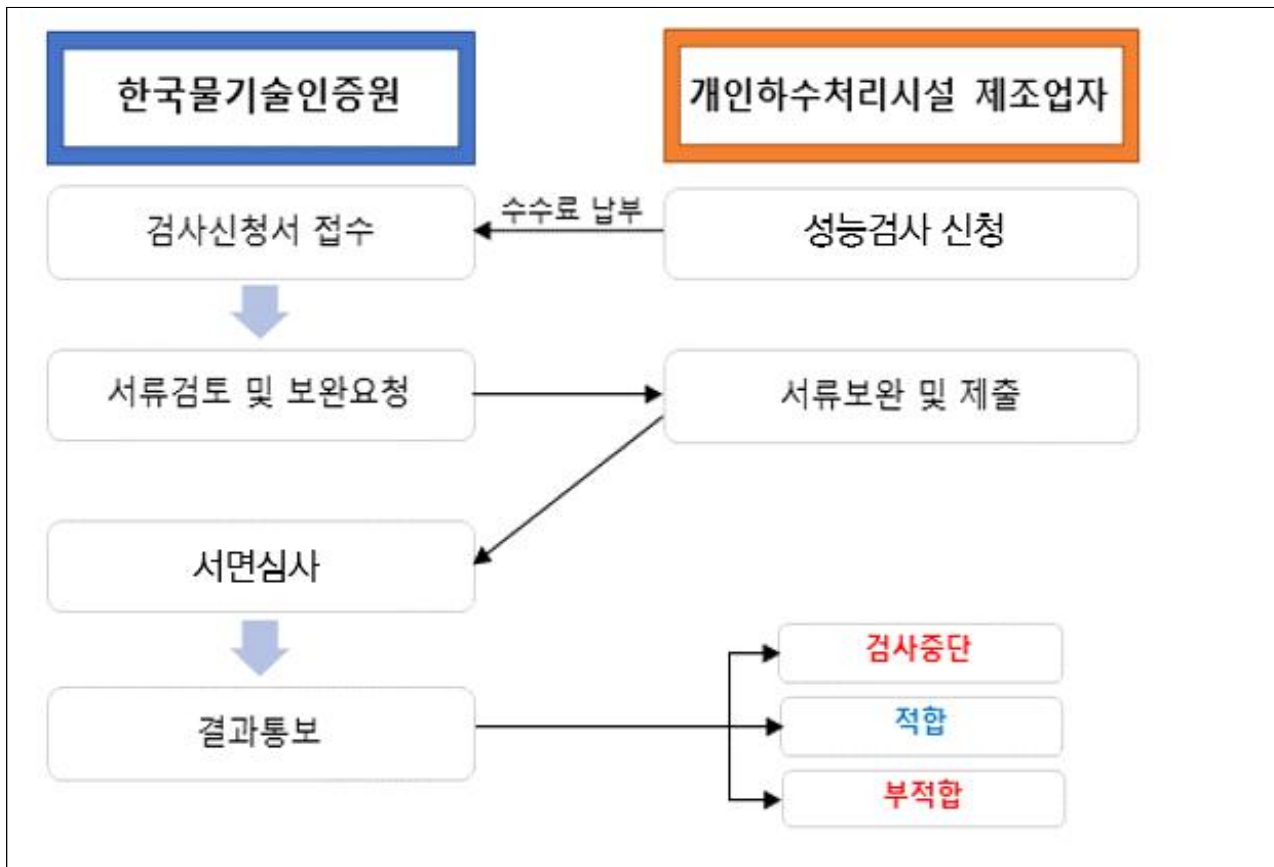
[별표 1]

[최초성능검사 업무처리절차]



[별표 2]

【서면성능검사 업무처리절차】



[별표 3]

【최초성능검사 신청서류 검토기준】

○ 처리방법 설명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 관련)

- 처리계통별 기능을 설명한 자료의 적정성 검토
 - 상부여유고 15%이상
 - 침전조 설계기준 설계유량 기준으로 체류시간 4hr이상이며, 월류위어 및 슬러지 수집기능을 포함
 - 에어배관 에어펌프와 산기관 및 에어리프트의 배관은 1대 1로 개별배관
 - BOD용적부하 $0.3\text{kgBOD}/\text{m}^3\cdot\text{day}$ 이하이어야 함
 - 여재부하량 접촉여재(HBC)의 필요 여재량 산정 시 여재부하량은 $5\sim 8\text{g}(\text{BOD}+\text{SS})/\text{m HBC}\cdot\text{일}$ 을 적용
 - 침전분리조 설계유량 기준으로 체류시간 8hr이상, 2실 이상의 다단 직렬구조 이어야 하며, BOD등 전처리 효율은 15%까지 산출 가능함
 - 유량조정조 설계유량 기준으로 체류시간 12hr이상이며, BOD 등 전처리효율은 5%까지 산출 가능함

○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2호 관련)

- 각 실별 구조 및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과 산출자료 비교확인
- 시행규칙 제55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의 구조·규격·재질 및 성능기준’ 준수여부 검토

※ 필요시 ‘하수도 설계기준(환경부)’을 참고하여 평가진행

○ 처리효율 산출자료(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3호 관련)

- 신청자가 제시한 유입부하량, 처리수질 등의 설계조건에 따른 처리효율 산출자료의 적정성 검토
-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시험설비에 대하여 국가 물산업클러스터 내 하수 실증플랜트에서 제공받는 원수를 유량계 봉인 시점부터 채취하여 측정된 BOD 값을 다음 횡수 검사의 설계 유입부하량 적정성 검토에 적용

— **〈참고 : 유량조정조 용량 확인방법〉** —

- ▶ 유량조정조의 용량은 조 바닥에서 유효수위까지의 용적으로 산정
- ▶ 다음 처리단계로 24시간 균등 배분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수위계에 의한 강제이송장치, 유량조절을 위한 원수의 By-pass 배관 및 시설 등)
- ▶ 2실 이상의 구조인 경우에도 12시간 이상 체류시간 및 24시간 균등배분을 위한 적정 기능을 수행할 수 있으면 적합한 것으로 인정

○ **부대시설 사양서**

- 접촉여재의 여재 충진율, 재질, 여재 부하계산에 의한 여재량과 송풍기 및 펌프 규격이 설계계산서와 일치여부 확인
- 송풍기의 A/S기한(보증기한)이 2년 이상인 제품 사용 및 설계사양서 필수 기재

— **〈참고 : 부대시설 사양서 일치여부 확인〉** —

1. 접촉여재 일치여부

- ▶ 부대시설 사양서에 기재된 접촉여재의 재질과 여재충진율 및 여재량 (여재부하계산서)이 설계도서와 일치여부 확인
- ▶ 접촉여재의 기능, 성능 등 제품특성에 대한 설명자료가 있는 경우 확인

2. 기자재(송풍기 및 펌프 등) 일치여부

- ▶ 규격(용량·양정) 및 동력이 설계계산서와 일치여부 확인

[별표 4]

【사전 현장점검 현장확인, 현장검사 점검사항 및 안내사항】

□ 사전 현장점검 시 현장 확인사항

○ 오수발생량 현장 확인

- 주거시설, 공장 등 상주인구로 증빙한 경우 건물 내 상주인구 확인
- 건축물 대장 확인
- 식당, 근린시설 등 영업활동 유무 확인
 - ※ 건설현장과 같이 영구적 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기간을 확인하여 검사종료일까지 유입부하량이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
-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 설치 시 오수발생량 현장 확인 생략

○ 시설의 적합여부 확인

- 신청시설과 실제시설의 일치여부를 현장 측정을 통하여 확인·사진촬영
- 단위시설 규격은 도면에 의해 기준점(맨홀 등)을 설정하여 실측 확인
- 성능검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시설이 도면과 불일치할 경우 1차 시료채취 전에 수정허용
- 부대시설과 설계도서의 일치여부 확인 및 모델번호, 제조번호 기록
-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고용노동부고시 제2020-3호)에 따라 성능검사 시설의 점검 및 검사를 위한 부대시설의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현장검사 점검사항

○ 유입 부하량 확인

- 유량계에 의해 일평균 유입유량 확인
- 매회 시료채취 결과 유입부하량이 70% 이상 유지여부 확인
- 최종 월의 유입부하량은 아침, 점심, 저녁의 평균 BOD농도와 아침 유량계지침으로 판정

-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유량계 봉인 시점부터 국가물 산업클러스터 내 하수 실증플랜트에서 제공받는 원수를 채취하여 측정된 BOD 값을 다음 횃수 검사의 설계 유입부하량 적정성 검토에 적용

○ 부대시설 확인

- 부대시설이 검사 종료 시까지 이상 없이 가동·관리여부 확인
- 기계장치가 설계용량에 미달 시 1회에 한하여 기계장치 교체가 가능하며, 당회 차 검사는 연기가능(차기 월에 2회 채수가능)

□ 현장점검에 관한 계획 및 절차 안내

○ 검사방법 등 안내

- 검사절차 및 시료채취 등에 대하여 검사시작 전 신청자에게 설명

○ 유량계의 적정설치 여부 확인

- 검사기관이 유량계 지침의 관측이 용이한 위치에 유량계 설치안내
- 신청자에게 유량계 조작방지 및 봉인부 관리에 대한 주의사항 안내

〈유량계 설치관련 유의사항〉

1. 일반사항

- ▶ 수도미터를 유량측정용 기기로 사용 시 검정기관의 봉인훼손 여부 확인
- ▶ 유량계 조작방지를 위해 유량계실 맨홀의 봉인처리
 - ↳ 맨홀봉인이 어려울 경우 유량계 및 유량계 유입부 배관 봉인

2. 유량계 봉인해제 사항발생시 조치사항

- ▶ 유량계 고장 또는 흡입관 막힘 등으로 봉인해제 요청시 1회에 한하여 신청자가 봉인해제(봉인 해제 전·후 유량지침 사진촬영)
- ▶ 검사기관은 조치사항 발생 후 1주일 이내에 현장상황 확인 및 재봉인
- ▶ 동일사항 재발생 시 검사중단
 - ↳ 원인파악 및 개선방안 도출 실시 후 검사 재 실시 여부 결정

○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할 경우

- 주 1회에 한하여 신청업체의 요청에 따른 현장점검* 가능
- * 기계·장비 점검, 유입 및 처리수 수질확인, 구조물 점검

[별표 5]

【시료채취 기준 및 유의사항】

○ 시료채취 및 분석

- 시료채취 및 분석에 대해서는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국립환경과학원 고시)’ 활용

○ 채취지점

- 유입수의 경우 유량조정조의 운영형태(호기 또는 단순저류), 혐기처리 겸용 여부 등을 검토·선정
-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물산업클러스터 내 하수 실증플랜트에서 제공받는 원수를 유량계 봉인 시점부터 채수하여 측정된 BOD 값을 다음 검사의 유입부하량 산정에 적용
- 처리수인 경우 최종방류구 등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지점선정

〈시료채취시 주의사항〉

1. 회석수 유입가능성 확인

- ▶ 방류수의 회석유무를 침전조 상등수와 방류수를 육안으로 비교확인
- ▶ 조작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시 조작방지 조치 후 시료채취일 연기

2. 검사실시 통지 관련

- ▶ 검사실시 통지는 검사일 당일, 현장도착 이후 실시
- ▶ 실증화시설에 검사대상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기 협의된 일정에 따라 시료채취 실시
- ▶ 신청자 입회가 어려운 경우 대리인 입회요청
- ▶ 대리인 입회도 어려운 경우 검사자 단독으로 시료채취
↳ 검사기관은 입회 곤란사유를 명기

○ 기타 사항

- 채취시료는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여 시료채취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분석이 시작되도록 조치
- 분석결과 BOD 유입부하량의 70%이상 유지, 신청서상의 처리수 수질기준 이내 여부확인 및 성능검사 확인표 작성

[별표 6]

【서면성능검사 검토 · 판정기준】

○ 서면성능검사 대상(시행령 제24조제3항 및 제32조제2항 관련)

- 시행령 별표 6 비고 제2호에 따라 시설의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비고 제2호** 성능검사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규격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처리공법, 처리용량 및 처리효율이 동일하고 총 유효용량만 증가하는 경우
 - 시행령 별표 1의6 제7호의2 및 제7호의3에 따라 시설의 규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 시행령 별표 1의6 제7호의2에 따라 침전분리조를 추가하는 경우 기존 시설의 처리공법에 미치는 영향이 없고, 유입수의 협잡물 제거만을 목적으로 하여야 함

○ 처리방법 설명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1호 관련)

- 처리계통별 기능을 설명한 자료의 적정성 검토
 - **여재 부하량** 최초성능검사 성적서 발급 당시의 설계사양서 상 여재포설량에 따른 여재부하량을 설정하여야 하며, 설정값이 $5 \sim 8\text{g}(\text{BOD}+\text{SS})/\text{m HBC} \cdot \text{일}$ 을 벗어나는 경우 해당 범위 내로 적용
 - **제원의 변경** 추가되는 침전분리조 및 유효용량 증가에 따라 변경되는 브로워 용량 및 여재량은 최초성능검사의 설계인자(산소전달율, 심도, 여재충진을 등)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 구조도 및 용량산출도서(시행규칙 제57조제1항제2호 관련)

- 각 실별 구조 및 용량을 확인할 수 있는 도면과 산출자료 비교확인

[별지 제1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시설내용	처리방법			규격			
	설계 처리효율	구분	BOD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수 (개/ml)
		유입수					-
		처리수					
	처리용량 (처리대상인원)	m³/일(명용)		검사희망일		년 월 일	
	재질 및 제조방법						
	설치예정장소						
등록관청 또는 등록예정관청							
용도	[] 제조등록 [] 준공검사		제조업체명(대표자): 소재지:		설계·시공업체명(대표자): 소재지:		
「하수도법」 제5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검사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1. 처리방법 설명서 1부 2. 구조도 및 처리용량 산출도서 각 1부 3. 설계 처리효율 산출자료 1부					수수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수료)	
210mm×297mm[백상지 80g/m²]							

[별지 제2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시설내용	처리방법				규격						
	재질 및 제조방법										
	설계 처리효율	구분	BOD (mg/L)	SS (mg/L)	T-N (mg/L)	T-P (mg/L)	총대장균군수 (개/ml)				
		유입수					-				
		처리수									
	처리용량 (처리대상인원)		m³/일(명용)								
	설치장소										
	설치일자										
	최초 시료채취희망일										
「하수도법」 제5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제3항에 따라 시료채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첨부서류	없음							수수료 없음			
유의사항											
성능검사기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한국물기술인증원 ※ 최종 검사 결과는 6개월간 8회 검사한 후 통지한다.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			접수(민원실)		→		시료채취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기록표

접수번호		접수일	
일반 현황	상 호		대 표 자
	주소(공장)		
	시설설치통지일		시료채취신청일
	설 치 장 소		
검사 신청 시설	처리방법		재 질 및 제조방법
	처리용량(호칭)	m ³ /일(인용)	설계유입수질 : mg/L(BOD)
	유량확인 설비		설계방류수질 : mg/L(BOD)
		규 격	

성 능 검 사 업 무 수 행

회차	시료채취일	시료번호	유량확인(적산유량계)		확 인	
			일일유량	지침	신청업체	검사자
시 료 채 취	차	. . .		-	m ³	
	차	. . .		m ³ /일	m ³	
	차	. . .		m ³ /일	m ³	
	차	. . .		m ³ /일	m ³	
	차	. . .		m ³ /일	m ³	
	차	. . .		m ³ /일	m ³	
	차	. . .		m ³ /일	m ³	
	차	. . .		m ³ /일	m ³	
	차	. . .		m ³ /일	m ³	

유의사항

특이사항

- 현장상황 등 필요사항 기재
- 성능검사 전 유량확인

[별지 제4호 서식]

검사신청시설 사전 점검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검사신청시설 개요					
검사시설	설치장소		처리용량		
			건축물용도		
	처리공정				
검사신청시설 세부내역					
검사시설	신청서류 설계사양 검토				
	설계근거	설계사양서	도면일치여부	현장일치여부	비 고
외부규격					
유량조정조 1실					
유량조정조 2실					
접촉폭기조 1실					
접촉폭기조 2실					
접촉폭기조 3실					
침전조					

검사자 : 급 (확인)

[별지 제5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사진 참고자료			
접수번호		접수일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검사신청시설 개요			
검사시설	설치장소	처리용량	
		건축물용도	
	처리공정		
현장 및 시설 사진			
< 본체 정면, 20 .00.00 >		< 본체 정면, 20 .00.00 >	
< 본체 정면, 20 .00.00 >		< 본체 정면, 20 .00.00 >	
< 본체 정면, 20 .00.00 >		< 본체 정면, 20 .00.00 >	

[별지 제6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확인표(1~5차)						
접수번호		성능검사일 : 2000. 00. 00(제 차)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검사신청시설 개요						
검사시설	설치장소			건축물용도		
	처리공정			처리용량 : m ³ /일		
	제원 및 재질 :			설계유입수질 : mg/L(BOD)	설계방류수질 : mg/L(BOD)	
검사항목 및 결과						
1. 유 량 : m ³ /일[A] (성능검사기록표 참조)						
2. 분석결과						
		B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유입수(mg/L)			-	-	-	-
방류수(mg/L)						
3. 성능검사 항목						
가. 유입BOD 부하량						
검 사 기 준		검 사 내 용			판 정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이상 [부하량(kg/일) = 유량(m ³ /일) × 유입수BOD농도(mg/ℓ) × 10 ⁻³] □부하량비율 = $\frac{(\text{실측치부하량}[C])}{(\text{설계치부하량}[B])} \times 100$		○설계치의 유입BOD부하량[B]: kg/일 ○유 입 유 량[A]: m ³ /일 ○유 입 수 BOD농도 : mg/ℓ ○실측값의 유입BOD부하량[C]: kg/일 □부하량비율 = $\frac{(\quad)}{(\quad)} \times 100 = \quad \%$			☐ 적 정 ☐ 부적정	
나. 방류수질						
검 사 기 준		검 사 내 용			판 정	
○ 지역 : (수변구역/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 BOD 농도 : mg/ℓ 이하 ○ SS 농도 : mg/ℓ 이하 ○ T-N 농도 : mg/ℓ 이하 ○ T-P 농도 : mg/ℓ 이하 ○ 총대장균군수 : 개/mL 이하		○ 지역 : (수변구역/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 BOD 농도 : mg/ℓ ○ SS 농도 : mg/ℓ ○ T-N 농도 : mg/ℓ ○ T-P 농도 : mg/ℓ ○ 총대장균군수 : 개/mL			☐ 적 합 ☐ 부적합	

[별지 제7호 서식]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확인표(6~8차)

접수번호	성능검사일 : 2000. 00. 00(제 6차)
------	----------------------------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검사신청시설 개요

검사시설	설치장소	건축물용도
	처리공정	처리용량 : m ³ /일
	제원 및 재질 :	설계유입수질 : mg/L(BOD) 설계방류수질 : mg/L(BOD)

검사항목 및 결과

1. 유 량 : m³/일[A] (성능검사기록표 참조)

2. 분석결과

	BOD(mg/L)			SS(mg/L)			T-N(mg/L)			T-P(mg/L)			총대장균군수(개/mL)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아침	점심	저녁
유입수				-	-	-	-	-	-	-	-	-	-	-	-
방류수															

3. 성능검사 항목

가. 유입BOD 부하량

검 사 기 준	검 사 내 용	판 정
○유입부하량이 설계치의 70%이상 [부하량(kg/일) = 유량(m³/일) × 유입수BOD농도(mg/ℓ) × 10⁻³] □부하량비율 = $\frac{(\text{실측치부하량}[C])}{(\text{설계치부하량}[B])} \times 100$	○설계치의 유입BOD부하량[B]: kg/일 ○유 입 유 량[A]: m³/일 ○유 입 수 BOD농도(아침): mg/ℓ ○유 입 수 BOD농도(점심): mg/ℓ ○유 입 수 BOD농도(저녁): mg/ℓ ○유 입 수 BOD농도(평균): mg/ℓ ○실측값의 유입BOD부하량[C]: kg/일 □부하량비율 = $\frac{(\quad)}{(\quad)} \times 100 = \quad \%$	□적 정 □부적정

나. 방류수질

검 사 기 준	검 사 내 용				판 정
○ 지역 : (수변구역/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 지역 : (수변구역/특정지역 및 기타지역)				□적 합 □부적합
○ BOD 농도 : mg/ ℓ 이하	구 분	아침	점심	저녁	
○ SS 농도 : mg/ ℓ 이하	○ BOD 농도(mg/L)				
○ T-N 농도 : mg/ ℓ 이하	○ SS 농도(mg/L)				
○ T-P 농도 : mg/ ℓ 이하	○ T-N 농도(mg/L)				
○ 총대장균군수 : 개/mL 이하	○ T-P 농도(mg/L)				
	○ 총대장균군수(개/mL)				

[별지 제8호 서식]

성적서번호 : 00-KWTC-000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성적서

신 청 인	상호(명칭)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시설 내용	처리방법						규격					
	재질 및 제조방법						설계유입농도		mg/L			
	처리용량 (처리대상인원)		m³/일(명용)									
	처리공법											
	시설소재지											
검사 내용	횟수	검사 일자	수질분석 결과(mg/L)									
			BOD		SS		T-N		T-P		총대장균군수 (개/ml)	
			유입 수질	처리 수질	유입 수질	처리 수질	유입 수질	처리 수질	유입 수질	처리 수질	유입수	처리수
	1											
	2											
	3											
	4											
	5											
	6											
	7											
8												
특이사항												
검사결과		적합 또는 부적합										
비 고												
「하수도법」 제52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에 따라 성능검사성적서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검사기관 (서명 또는 인)												

오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시료채취 입회 대리인계

신청인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	
검사신청시설 개요				
검사시설	설치장소		건축물용도	
	처리공정		처리용량 : m ³ /일	
	제원 및 재질 :		설계유입수질 : mg/L(BOD)	설계방류수질 : mg/L(BOD)
시료채취 입회대리인 선임				
○ 소 속 : ○ 성 명 : ○ 주 소 : ○ 연 락 처 : 상기 인을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실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의 시료채취 입회 대리인으로 선임하였기에 대리인계를 제출하며, 아울러 시료채취 입회 대리인도 부재 시(연락두절 또는 연락 후 1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성능검사자가 입회인의 확인없이 시료를 채취하는데 있어 본 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임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대리인 : (인) 신청인 : (인)				

[별지 제10호 서식]

성능검사성적서 번호 :

설계도면

※ 본 설계도면은 「하수도법」 제52조제4항에 근거하여 성능검사기관(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실시한 ‘개인하수처리시설 제조제품 성능검사(서면심사)’ 결과,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의 도면으로 임의수정 및 변경을 금지하며, 관할지자체에 등록 후 제조 및 판매 하여야 합니다.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품 정보공개 동의서

신청인(본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실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에서 최종합격할 경우 신청제품(시설)에 대한 정보공개 항목*이

인증원 홈페이지에 공개됨에 동의합니다.

* 정보공개 항목 : 업체명, 제작자주소, 설치장소, 전화번호, 시설구분, 처리용량, 규격,
유입·처리수질, 처리공법, 재질 및 에너지 사용 단가, BOD용적부하,
설계도면 등을 포함한 제품(시설) 관련 세부사항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대표자) : (인)

[별지 제12호 서식]

위 임 장

성 명 :

소 속 :

상기 본인은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20 년 월 일에 개최되는 제00회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심의위원회에서의 의결권을 위원장께 위임합니다.

20 년 월 일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심의위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서면의결서

안건번호 : 제000회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심의위원회 제000호 안건

안건내용 :

상기 안건을 운영요령 제15조제6항에 따라 서면으로 결의하고자 하오니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안건번호	동의여부(○/×)	의 건

상기 안건에 대하여 위와 같이 심의하여 그 결과를 알려드립니다.

20 년 월 일

한국물기술인증원장 귀하

심의위원 : (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제품 판매 · 설치실적 제출 동의서

신청인(본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실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에서 최종합격할 경우 신청제품(시설)에 대한

분기별 판매 · 설치실적을 인증원에 제출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대표자) : (인)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 부정행위 적발시 검사신청 금지 동의서

신청인(본인)은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실시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
성능검사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는 경우 해당 행위의 적발일로부터
3년 동안 성능검사 신청이 금지됨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업 :

신청인(대표자) : (인)

[별지 제16호 서식]

입주기업 선정 평가서

접수번호			
기업명		신청인(대표자)	
입주신청 시설	시설용량		
	처리방법		
	규격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점수
수행역량 (20점)	기술진 사업경험 및 수행능력	20	
기술성 (70점)	기술 인력 및 제조장비 현황	10	
	개발제품 활용도	10	
	에너지 사용단가	20	
	BOD용적부하 적정성	10	
	침전분리조 설계 적정성	10	
	최종침전조 설계 적정성	10	
사업성 (10점)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10	
합 계		100	

평가의견	

본 평가위원은 본 신청서를 공정하게 평가하였음을 확인하고, 신청자와 상의 없이 신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 또는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진행상황 및 평가결과에 대해 외부에 비밀을 유지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민사상의 고발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평가위원	소 속		성 명	(서 명)
	직 위		전화번호	

입주기업 선정 항목별 평가점수표

구 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등급별 점수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취약
수행역량 (20점)	기술진 사업경험 및 수행능력	20	20	16	12	8	4
기술성 (70점)	기술 인력 및 제조장비 현황	10	10	8	6	4	2
	개발제품 활용도	10	10	8	6	4	2
	에너지 사용단가	20	20	16	12	8	4
	BOD용적부하 적정성	10	10	8	6	4	2
	침전분리조 설계 적정성	10	10	8	6	4	2
	최종침전조 설계 적정성	10	10	8	6	4	2
사업성 (10점)	목표시장 규모 및 성장성	10	10	8	6	4	2
합계		100					